

정년보장교원심사규정

제정 : 2012.06.01
개정 : 2014.11.01
개정 : 2016.12.01
개정 : 2020.03.01
개정 : 2020.12.01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2.12.01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이라 칭한다) 교원의 교육활동, 산학협력활동, 연구활동, 봉사활동 및 대학발전 기여활동 등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한 해당교원의 정년을 보장하고, 교원 및 대학의 발전과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03. 01.>

제2조(적용범위) ① 본 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당해년도 승진대상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0. 12. 01.>
② <삭제 2014. 11. 01.>

제3조(심사항목)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 기준은 「교원인사규정」을 적용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2. 12. 01.>

제4조(심사기간) 매년 실시한 교원업적평가 중 해당연도로부터 최근 7년간 결과를 자료로 활용한다. <개정 2014. 11. 01.>

제 2 장 정년보장심사위원회

제5조(구성) ① 교원의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,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대학 내에 정년보장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함)를 둔다. <개정 2014. 11. 01.>
②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

이 임명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0. 03. 01., 2021. 12. 01.>

제6조(기능) ① 정년보장심사 자료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신청 교원의 평가항목별 업적을 심사한다.

② 신청 교원의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, 교원별 정년보장심사 결과 및 신청 교원의 정년보장심사 분석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4. 11. 01.>

④ 필요한 경우, 위원회는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01.>

⑤ 정년보장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심의한다.

제7조(정년보장심사 자료 관리) ① 위원장은 정년보장심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정년보장심사 자료를 관리한다.

② 총장은 각 교원별 정년보장심사 결과를 해당교수에게 통보한다.

제8조(정년보장심사 자료 제출 및 이의 제기) ① 대상자는 대학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정년보장심사 신청서를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0. 03. 01.>

② 필요한 경우 정년보장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년보장심사와 관련하여 신청 교원에게 추가 자료 및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③ 해당교원에게 통보된 정년보장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, 해당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제9조(정년보장 임용) ① 정년보장교원 임용은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고,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
② 정년보장 교원의 정수는 「학교법인 민송학원 정관」에 따른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 3 장 정년보장심사 방법

제10조(정년보장심사 방법) ① 정년보장심사는 [별표1]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정년보장심사위원회 의견의 평가점수가 평균 8.0점 이상 인자를 정년보장교원임용대상자로 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16. 12. 01.>

②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해당연도로부터 최근 7년간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교원정년보장 심사 최소요건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16. 12.

01.>

③ 제2항의 기간 미도래로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평가결과가 심사 최소요건의 미충족으로 대상자가 없을 경우 대상자를 총장이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11. 01.> <개정 2021. 12. 01.>

제11조(정년보장심사 결과의 기밀유지) 정년보장심사의 결과는 이 규정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.

제12조(기타)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 평가표

피평정자	소 속	직 명		성 명				
구 분	평 가 요 소	배 점	평가 점수					비 고
			수	우	미	양	가	
교육자로서의 품위 및 태도(5점)	○ 교육자로서의 기본자세, 인품	2	2	1.6	1.2	0.8	0.4	인격, 품위
	○ 학내 및 학과 내의 인화관계	2	2	1.6	1.2	0.8	0.4	인화, 협조
	○ 모범성과 성실성	1	1	0.8	0.6	0.4	0.2	대학 운영 및 주요정책 참여도 등
행정 사항 이행 및 준수(5점)	○ 근무자세	0.5	0.5	0.4	0.3	0.2	0.1	근무자세, 상벌사항
	○ 행정사항 이행	0.5	0.5	0.4	0.3	0.2	0.1	행정지시사항 이행 등
	○ 근무규정 준수	1.5	1.5	1.2	0.9	0.6	0.3	책임시수이행, 결강여부 등
	○ 대학 또는 학과 행사 및 연수활동도	1	1	0.8	0.6	0.4	0.2	국내외 학술 활동, 산업체 연수 등
	○ 대학 또는 학과 발전 기여도	1.5	1.5	1.2	0.9	0.6	0.3	학내 중요보직 2년이상 학내 보직 2년이상 학과장 포함 및 위원회 참여 및 수행 실적
합 계		10						

심사평가표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심사평가한 것임을 확인함.

위원 : (인)

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

대원대학교 총장 귀하